

웅지세무대학교 평생교육원	평생교육원 운영규정	문서번호	8-2-01(O)-0
		제정일자	07.12.25
		최근개정	13.01.01
		주관부서	평생교육원
		홈페이지공개	공개

웅지세무대학교 평생교육원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원은 웅지세무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(이하 "본원")이라 칭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본원은 대학교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, 대학교생 또는 대학교생외의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을 운영한다.

제3조(위치) 본원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웅지세무대학교 내에 두며,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또는 지역을 불문하고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. 본원을 설치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2장 조직

제4조(원장)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 및 초빙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교직원) ①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소속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본원의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소속의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 평생교육원 전임교원의 자격, 근로조건, 채용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,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교원으로 보지 않는다.

③ 평생교육원의 전임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④ 평생교육원 강사는 평생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. 강사료는 교육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(구성)**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단, 학점은행제가 실시되거나 평생교육원을 교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대학교 및 본원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평생교육원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처 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되며, 위원회를 총괄한다.

**제7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임기의 시작은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.

**제8조(기능)**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4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5. 평생교육원 관할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
7. 평생교육원의 내외 설치에 관한 사항
8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9조(의결)**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4장 설치과정

**제10조(학습기간)** 각 과정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습기간을 결정하며, 학습자는 적절한 시기에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. 단, 기존의 강좌를 다시 개설할 때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기간을 적용한다.

**제11조(학습일수)** 주 학습일수는 강좌의 내용과 수강대상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.

**제12조(지원자격)** 학력, 연령, 성별, 지역 등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과정의 성격 상 특별히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3조(선발방법)** 본원의 학습자는 서류전형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4조(설치과정 등)**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.  
 ② 제1항의 설치 과정과 학습 인원 및 제 15조의 수강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수강료)**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 
 ② 수강료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[별표3]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.

**제16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**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과목을 70%이상 이수한 자를 수료자로 본다.  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평생교육원장이 발행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##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**제17조(자치회)** ① 학업의 효율과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  
 ② 자치회의 운영은 자치회에 일임한다.

**제18조(학습자 활동의 금지)**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,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**제19조(포상)** 학습태도와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 할 수 있다.

## 제6장 회계

**제20조(예산 및 결산)** 본원 예산 편성과 결산은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21조(수입원)**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수강료
2. 교비 지원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시)
4. 기타수입

**제22조(회계집행)**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 회계과에서 관장한다.

부 칙 <1판-제정/시행 2007.12.25.>

이 규정은 2007년 12월 25일 부터 실시한다.

부 칙 <2판-개정/시행 2008.03.20.>

이 규정은 2008년 03월 20일 부터 실시한다.

부 칙 <3판-개정/시행 2013.01.01.>

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 부터 실시한다.